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백서

2025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총괄팀

목 차

1. 연구개발비 개념 P. 1
2. 연구개발비 지급 P. 3
3.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 및 절차 P. 5
4.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P. 7
5. 연구개발비 정산 체계 P. 30
6.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사례 P. 34
7.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설명자료 P. 40

1 연구개발비 개념

■ 연구개발비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별 연구개발비 구성

- 비영리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
 - 단, 아래의 사유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1.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영리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
 - 단, 아래의 사유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음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현금) (그 외 기관 지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초기 중견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의미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본권 '참고1.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해당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연차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으며 단계(또는 최종) 연구기간 내 사용이 가능함. 다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현물부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원 또는 부담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제정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연구개발비 지급

■ 연구개발비 지급 유형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일괄 또는 건별 형태로 구분하여 지급
 - (일괄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
 - (건별지급)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별로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지급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aia.go.kr)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연구개발비 지급 유형 조회 가능



통합연구지원
연구수행기관 연구비 지급유형 현황

○ 연구수행기관 연구비 지급유형 안내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GAIA)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후 연구비 지급유형(일괄, 건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53조 참조, 관련 문의는 ezbarotf@nrf.re.kr 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연구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검색

번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유형
----	-----	---------	----

검색창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후 검색하세요

<연구개발기관별 지급 유형 관련 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5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를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

제45조(대학 연구개발비 구성·지급·이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구성·지급·이관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53조(기타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를 사용하여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일괄지급
2.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경우: 건별지급

제61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를 사용하여 영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
2. 해당 영리기관이 공기업이 아닌 경우: 건별지급

3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 및 절차

■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

	<p>연구활동 기간 내 사용 원칙</p> <p>단,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가능</p> <p>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턴 2년까지 사용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p>
	<p>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등) 사용 원칙</p> <p>불가피할 경우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 가능(사유서 증명자료 첨부)</p>
	<p>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구비</p>
	<p>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는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필수</p>

■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
 -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제외),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발의 하에 사용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 포함)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구분	일괄지급 연구개발과제	건별지급 연구개발과제
연구비카드 사용	카드 결제대금 이체일로부터 5일 이내	카드 사용일부턴 결제대금 이체 전까지
그 밖의 경우(계좌이체 등)	연구개발비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하기 전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하기 전
보고서발간및평가관련비용공공요금제세공과금 연구수당 등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 증명자료 보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
- ※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증명자료는 별도 보관 의무 면제

▣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구분	계상불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환차익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주류 등 유희성 비용 	
중복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한 비용 ·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한 비용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해당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내부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 총괄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예외(계상가능)</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외(계상가능)
예외(계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공간
임차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4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사용

-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5조~제17조)

※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기관 유형별 기준, 사용절차 등은 일정에 따라 안내될 수 있음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정의) 15.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항

인건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인사, 채용 등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지급 불가함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정의)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나. 학생인건비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19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참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부설기관(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극지연구소, 녹색기술센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 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별표 1의1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 나. “연구시설”이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의 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1.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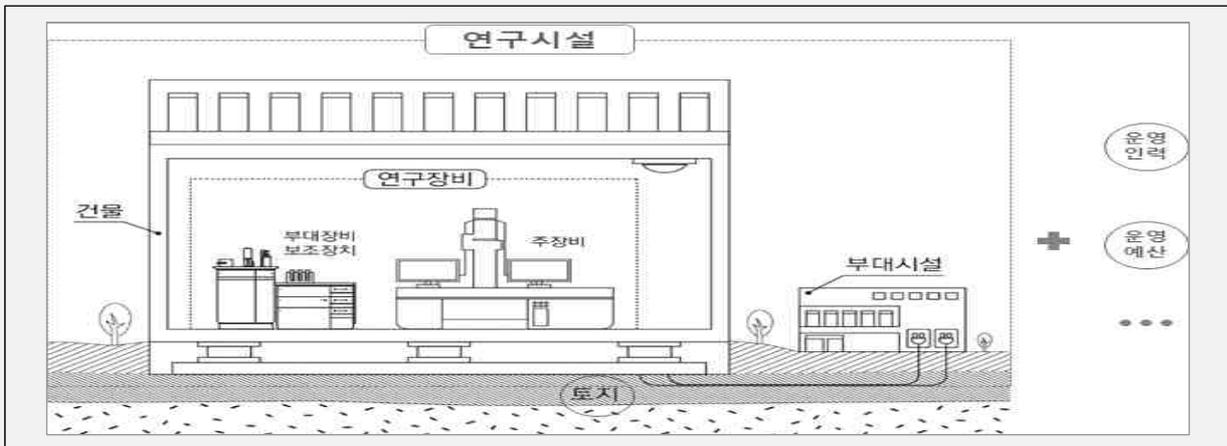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 과 ‘연구장비’ 를 총칭함
 -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 을 말함
 - ‘연구시설’ 이란 ‘특정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 을 말함
 1. 부대시설을 포함한 하나의 거대 연구장비
 2.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 ‘연구시설’ 이란 ‘특정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 을 말함
 1. 부대시설을 포함한 하나의 거대 연구장비
 2.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3.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고 : 연구시설장비 포함대상과 제외대상>

구분	포함대상	제외대상
연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장비운영시설(핵융합장치, 가속기 등) - 연구장비집적시설(나노팹센터, 핵심연구지원 시설 등) - 과학시료관리시설(생물사육시설, 화합물은행 등) -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 빅데이터센터 등) - 관측/측정시설(기상관측시설, 천문측정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교수실,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행정동, 강당, 기숙사, 식당) 등
연구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등) -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조성형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office, Matlab 등)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2. 연구시설장비의 구성



- 연구장비는 일반적으로 주장비, 보조장치 그리고 부대장비로 구성되며, 연구장비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주장비를 결합하거나, 주장비와 보조장치, 또는 주장비와 부대장비 등으로 구성되기도 함

$$\text{연구장비} = \text{주장비} + \text{보조장치} + \text{부대장비}$$

- 주장비란 추가적인 부대장비 없이도 본래의 구축 목적에 맞는 활용 및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장치
- 보조장치란 주장비의 성능향상이 아닌 본래 주장비의 구축 목적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보조물·부속물
- 부대장비란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시설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연구장비,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 운영 인력·예산이며, 연구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로 구성되기도 함
 - 토지란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땅’으로,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축연도의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함
 - 건물이란 ‘토지에 붙어서 지붕, 기둥, 벽, 창 및 바닥으로 구성하여 일정한 형상을 갖추고 주거, 업무 등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건조물’로, 건물가격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함
 - 부대시설이란 ‘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한 유틸리티 등’을 말함
 - 운영인력이란 ‘별표 6의 인건비 지급 대상인 전담운영인력, 전담지원인력 등’을 말함
 - 운영예산이란 ‘연구시설을 운영·유지하는데 투입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조달되는 지속적인 재원’을 말함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함

**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림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참고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5. 4. p.214>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 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참고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5. 4. p.217>

- ❶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❷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함
- 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8.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9.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10.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1.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 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제11조의2(보안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수당의 사용용도는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개정 2024. 2. 6.>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제13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장비,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15조(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3.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4.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5.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하여야 한다.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5.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중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 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③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7.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다. 홍보전문가 양성
 -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

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

구분	대상	범위
1. 등록	가.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
	나.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다.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라.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마.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

구분	대상	범위
		을 요약한 정보
	바.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질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발현체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사.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아.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2. 기탁	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나.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다. 신제품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제품 및 관련 정보

5 연구개발비 정산 체계

■ 기본개념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한국연구재단	비고
연구개발비 집행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사용실적보고서 이지체크 검토	공통정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대상) 단계/전체 연구기간 종료 모든 과제	정례 실시
			상세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기준 검토 (대상) 단계/전체 연구기간 종료과제 중 자체정산역량 미보유 기관 과제	정례 실시
			상시점검 연구개발비 정산 전 사전점검 (대상) 진행 과제 중 특이사항 발생과제	상시 실시

■ 주요내용

구분	정 산		상시점검
	공통정산	상세정산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2조
대상	단계 또는 전체 연구기간 종료 모든 과제	단계 또는 전체 연구기간 종료 과제 중 자체정산역량 미보유 기관과제	연구 진행 과제 중 특이사항 발생과제
추진 방법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의 적합여부 검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 사용내역을 사전점검하여 부정적 집행 예방
	연구수당 등 14개 이지체크 항목으로 검증	사용실적과 관련된 증명자료의 적합성 검증	점검항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검토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연구정산팀 및 외부전문가(필요시)	연구정산팀 및 외부전문가(필요시)
추진 시기	상시 접수 * 연구개발기관 제출기한: 단계 또는 전체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 1회 내외	상시실시
비고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와 일부 추출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정산을 추진		

※ 연간 일정에 따라 추진방법 및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및 확인

- (대상) 단계 또는 전체 연구기간이 종료된 모든 과제
- (방법)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지체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 실시

<이지체크 항목(24년도 기준)>

항목	항목설명	비고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1. 전년도 이월금액은 반영되었는지 확인	
	2. 위탁연구개발비(20%이상) 당초계획금액 대비 증액되었는지 확인	
	3.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당초계획 직접비의 40% 이내 집행되었는지 확인	
	4. 연구수당, 간접비가 당초계획금액 대비 증액이 되었는지 확인	
	5. 비목별 사용 잔액이 0원 미만인 금액(-금액)이 있는지 확인	
	6. 연구시설·장비비 중 3천만원 이상 집행한 내역이 기기장비 및 공동활용장비로서 ZEUS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7. 과제종료 3개월전 민간부담금을 입금하였는지 여부 확인	
	8. 부가세 환입 신청 후 납입하였는지 여부 확인	
연구수당	9. 연구수당 단독수령이 있는지 확인(1인과제일 경우 제외)	
	10.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 집행되었는지 확인	
	11.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율이 총 지급액의 70% 초과 금액이 있는지 확인(1인 과제일 경우 제외)	
	1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이 지급 되었는지 확인	
간접비	1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	
발생이자	14.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 규정 개정,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적용 등에 따라 이지체크 항목 변경 가능

■ **[상세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검토**

- (대상) 해당연도에 연구기간(단계 또는 전체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 중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정산역량이 부족**한 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적용

** 자체정산역량 부족기관 판단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 상기 이외에도 각종 행정점검 등을 통해 정산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와 일부 추출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정산 추진 가능

※ 상기 이외 상세정산 대상 과제의 기준은 해당연도 전체 상세정산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추진

- (내용)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용실적과 관련된 증명자료의 적합성을 자세하게 검증하는 방법으로 정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이 적합한지 검토

<상세정산 항목(예시)>

분야	점검항목	점검내용	비고
초과집행	연구수당 단독집행	연구수당 단독 수령금액 여부 확인(1인과제 제외)	
	연구수당 초과집행 (학생연구자 미참여)	학생연구자 미참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연구수당 초과 집행여부 검토	
	수정인건비 감액에 따른 연구수당 초과집행	원래 계획보다 감액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이 집행 되었는지 검토	
	현물부담여부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지 여부 검토	
중복집행	연구비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중복증빙	타 과제의 연구비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중복사용 여부 검토	
규정준수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연구장비 심의번호 일치 여부,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전 집행 여부, ZEUS 등록번호 일치 유무 검토	
부가세관리	부가가치세 반납 여부	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나 연구비로 집행여부	
간접비이월	간접비 이월사용 여부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의 간접비 이월 사용 검토	

<상세정산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연구개발비 집행 데이터 추출 (상세정산을 위한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실적보고서 연구개발비 집행 데이터 추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또는 IRIS) 및 통합이지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추출 	
↓		
상세정산 실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집행 데이터를 토대로 상세정산 실시 → 서류점검 대상과제 추출 	
↓		
서류점검 대상과제 증빙자료 제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점검 대상과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연구개발비 집행 증빙자료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업로드 또는 전자파일 요청 	
↓		
상세정산 실시(2차) * 서류점검 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점검 대상과제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상세정산 실시 - 필요시 보완 서류 추가 요청(이메일 제출 등) 	
↓		
상세정산 결과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정산 결과확정 및 결과보고 	
↓		
상세정산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정산(서류점검 대상과제) 결과확정 내용 통보 - 상세정산 결과 통보 및 회수금 납부방법 등 안내 	

- (후속조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금액 반납(또는 이의신청*) 및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규정 검토 등

* 1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4조)

- **[상시점검]** 연구(전체 또는 단계 연구)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상시점검하여 부정적 집행 사전 예방

- (대상)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이 있는 과제 ※ 상세정산 대상과제 제외
- (내용)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특이과제 점검 실시

6 부적정 집행사례 ※ 2024년 기준

①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위반내용

- 기관의 공용(또는 타 사업비로 공간을 마련한) 사용공간의 전기공사 비용을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에 따라 기관의 공용 공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 집행이 불가하며 공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접비로 집행하여야 함

② 연구재료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위반내용

- 연구단은 행사 전시 모형 제작 및 방문자를 위한 체험 키트 제작 비용을 연구재료비(직접비)로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에 따라 연구단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③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략-
- ⑥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위반내용

- 참여연구자가 아닌자(영리기관 계약직 직원)의 급여를 연구활동비로 지급함
-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건비 계상 가능 여부 확인 및 제6항에 따라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사용 기준 별지 3호) 제출이 필요함

④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위반내용

- 참여연구자의 출장비를 중복하여 계상함(원소속기관과 타기관 연구과제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에 따라 **동일 비용 2회 이상 중복 집행은 불가함**

⑤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위반내용

- 결의 제목과 실제 구매항목이 불일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에 따라 **실제 집행내역에 대한 증명자료 입증이 필요함**

⑥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위반내용

- 내부 참석자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회의 참석 및 회의비를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의비는 외부 참석자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⑦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반내용

-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으로 에어컨을 구매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에 따라 영리기관은 협약시 연구실운영비사용계획서 제출 후 사용이 필수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사전 승인이 필요함

⑧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다. 홍보전문가 양성
 -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 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 위반내용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구분하여 사용이 필요함

⑨ 보안수당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26조의2(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216)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

□ 위반내용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를 초과하여 보안수당을 지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의2 및 매뉴얼에 따라 보안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함

⑩ 연구수당 사용 기준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 위반내용

- 비영리기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집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에 따라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⑪ 연구수당 사용 기준(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위반 사례

□ 관련규정

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연구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대)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내용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 계상이 불가함

7 상시점검 설명자료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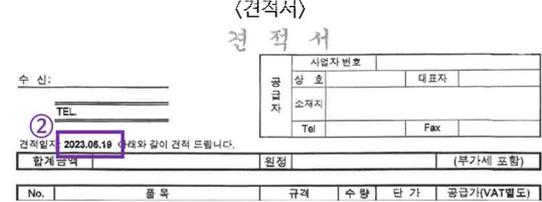
점검분야	점검내용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과 내</p>	<p>(1)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내부거래</p>																																																																										
	<p>항목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비용은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연구개발비 집행 시 불인정 																																																																										
	<p>관련규정</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제5호</p>																																																																										
<p>점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일치 여부 확인 																																																																											
<p>확인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가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내부거래 해당 시, 규정(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 내부거래 해당 시, 결의내역 취소 																																																																											
<p>① 거래처, 가맹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연구비카드 매출전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전자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정보가 연구개발기관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p> <p>② 내부거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결의제목 및 증명자료 등에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p>																																																																											
<p style="text-align: center;">올바른 예시</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올바른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연구비카드 매출전표〉</p> <table border="1"> <tr><td>카드번호</td><td></td></tr> <tr><td>거래일자</td><td>2022-08-09</td></tr> <tr><td>금액</td><td>(공급가액: 부가세: 0)</td></tr> <tr><td>매입구분</td><td>회합</td></tr> <tr><td>승인번호</td><td></td></tr> <tr><td>승인시각</td><td></td></tr> <tr><td>가맹점명</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가맹점번호</td><td></td></tr> <tr><td>소재지</td><td></td></tr> <tr><td>업종명</td><td>기타18</td></tr> <tr><td>대표자명</td><td></td></tr> <tr><td>연락처</td><td></td></tr> </table>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자세금계산서〉</p> <table border="1"> <tr><td>승인번호</td><td></td></tr> <tr><td>등록번호</td><td>종사업장번호</td></tr> <tr><td>상호</td><td>(주) 상명</td></tr> <tr><td>사업장</td><td>상호</td></tr> <tr><td>연대</td><td>연대</td></tr> <tr><td>이해일</td><td>이해일</td></tr> <tr><td>직접일자</td><td>공급가액</td><td>세액</td><td>수령사유</td><td>비고</td></tr> <tr><td>2022-01-07</td><td></td><td></td><td></td><td></td></tr> <tr><td>월</td><td>일</td><td>종목</td><td>규격</td><td>수량</td><td>단가</td><td>공급가액</td><td>세액</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금액</td><td>환급</td><td>수표</td><td>예금</td><td>외상미수금</td><td colspan="4">이 금액은 (원) 구 합</td></tr> </table> </div> </div>	카드번호		거래일자	2022-08-09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0)	매입구분	회합	승인번호		승인시각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소재지		업종명	기타18	대표자명		연락처		승인번호		등록번호	종사업장번호	상호	(주) 상명	사업장	상호	연대	연대	이해일	이해일	직접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령사유	비고	2022-01-07					월	일	종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금액	환급	수표	예금	외상미수금	이 금액은 (원) 구 합			
카드번호																																																																											
거래일자	2022-08-09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0)																																																																										
매입구분	회합																																																																										
승인번호																																																																											
승인시각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소재지																																																																											
업종명	기타18																																																																										
대표자명																																																																											
연락처																																																																											
승인번호																																																																											
등록번호	종사업장번호																																																																										
상호	(주) 상명																																																																										
사업장	상호																																																																										
연대	연대																																																																										
이해일	이해일																																																																										
직접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령사유	비고																																																																							
2022-01-07																																																																											
월	일	종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금액	환급	수표	예금	외상미수금	이 금액은 (원) 구 합																																																																						
<p>집행오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거래비용 집행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타 기관에게 의뢰한 교육비용 등을 연구개발비에서 청구 																																																																											

점검분야	점검내용																																																																															
연구 비 예시	[2] (건별 지급 과제)증명자료 확인 불가(현물 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항목설명</td> <td>○ 건별 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 시, 반드시 증명자료를 포함하여야 함</td> </tr> </table>	항목설명	○ 건별 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 시, 반드시 증명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항목설명	○ 건별 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 시, 반드시 증명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관련규정</td> <td>「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제2항 제2호</td> </tr> </table>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제2항 제2호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제2항 제2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점검방법</td> <td>○ 건별 지급 대상 중 증명자료가 미흡한 집행내역 추출</td> </tr> </table>	점검방법	○ 건별 지급 대상 중 증명자료가 미흡한 집행내역 추출																																																																														
점검방법	○ 건별 지급 대상 중 증명자료가 미흡한 집행내역 추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확인 요청사항</td> <td>○ 통합Ezbaro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증명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는지 확인 ⇒ 증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내역에 증명자료 업로드</td> </tr> </table>	확인 요청사항	○ 통합Ezbaro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증명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는지 확인 ⇒ 증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내역에 증명자료 업로드																																																																														
확인 요청사항	○ 통합Ezbaro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증명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는지 확인 ⇒ 증명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내역에 증명자료 업로드																																																																															
<p>① 건별 지급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록 시,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등록 ② 연계 증빙(연구비카드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에서 요구하는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은 생략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p>올바른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58 1489 949 1892" style="border: 1px solid purple;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비카드 매출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카드 번호</td><td></td></tr> <tr><td>거래 일자</td><td>2022-08-09</td></tr> <tr><td>금액</td><td>(공급가액: 부가세: 0)</td></tr> <tr><td>매입 구분</td><td>취입</td></tr> <tr><td>승인 번호</td><td></td></tr> <tr><td>승인 시각</td><td></td></tr> <tr><td>가맹점명</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가맹점 번호</td><td></td></tr> <tr><td>소재지</td><td></td></tr> <tr><td>업종명</td><td>기타18</td></tr> <tr><td>대표자명</td><td></td></tr> <tr><td>연락처</td><td></td></tr> </table> </div> <div data-bbox="957 1489 1396 1892" style="border: 1px solid purple;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세금계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승인번호</td><td></td></tr> <tr> <td>등록번호</td> <td>종사업장번호</td> <td>등록번호</td> <td>종사업장번호</td> </tr> <tr> <td>상호 (주)</td> <td>성명</td> <td>상호</td> <td>성명</td> </tr> <tr> <td>사업장</td> <td>사업장</td> <td>사업장</td> <td>사업장</td> </tr> <tr> <td>업태</td> <td>종목</td> <td>업태</td> <td>종목</td> </tr> <tr> <td>이메일</td> <td></td> <td>이메일</td> <td></td> </tr> <tr> <td>작성일자</td> <td>공급가액</td> <td>세액</td> <td>수령사유</td> </tr> <tr> <td>2022-01-07</td> <td></td> <td></td> <td>비고</td> </tr> <tr> <td>발행일</td> <td>종목</td> <td>규격</td> <td>수량</td> </tr> <tr> <td></td> <td>단가</td> <td>공급가액</td> <td>세액</td> </tr> <tr> <td></td> <td></td> <td></td> <td>비고</td> </tr> <tr> <td>합계금액</td> <td>환급</td> <td>수표</td> <td>여유</td> </tr> <tr> <td></td> <td></td> <td></td> <td>외상미수금</td> </tr> <tr> <td></td> <td></td> <td></td> <td>이 금액을 (첨가) 함</td> </tr> </table> </div> </div>	카드 번호		거래 일자	2022-08-09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0)	매입 구분	취입	승인 번호		승인 시각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소재지		업종명	기타18	대표자명		연락처		승인번호		등록번호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종사업장번호	상호 (주)	성명	상호	성명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이메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령사유	2022-01-07			비고	발행일	종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금액	환급	수표	여유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첨가) 함
카드 번호																																																																																
거래 일자	2022-08-09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0)																																																																															
매입 구분	취입																																																																															
승인 번호																																																																																
승인 시각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소재지																																																																																
업종명	기타18																																																																															
대표자명																																																																																
연락처																																																																																
승인번호																																																																																
등록번호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종사업장번호																																																																													
상호 (주)	성명	상호	성명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이메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령사유																																																																													
2022-01-07			비고																																																																													
발행일	종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합계금액	환급	수표	여유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첨가)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집행오류 예시</td> <td>○ 건별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합Ezbaro에 증명자료 미등록</td> </tr> </table>	집행오류 예시	○ 건별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합Ezbaro에 증명자료 미등록																																																																														
집행오류 예시	○ 건별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합Ezbaro에 증명자료 미등록																																																																															

점검분야	점검내용								
기 내	[3] 현물 부담 사용용도 부적합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항목설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부담 가능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 소프트웨어활용비(2025년) 인정 </td> </tr> </table>	항목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부담 가능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 소프트웨어활용비(2025년) 인정 						
	항목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부담 가능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 소프트웨어활용비(2025년) 인정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관련규정</td> <t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td> </tr> </table>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점검방법</td> <td>○ 현물 부담 내역으로 등록된 사용내역 정보 확인</td> </tr> </table>	점검방법	○ 현물 부담 내역으로 등록된 사용내역 정보 확인							
점검방법	○ 현물 부담 내역으로 등록된 사용내역 정보 확인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확인 요청사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부담 내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 현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삭제 후 규정에 명시된 적합한 사용내역으로 재집행 처리 </td> </tr> </table>	확인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부담 내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 현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삭제 후 규정에 명시된 적합한 사용내역으로 재집행 처리 							
확인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부담 내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 현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삭제 후 규정에 명시된 적합한 사용내역으로 재집행 처리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물 부담 내역 등록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서 명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② 현물로 연구시설장비를 등록 시, 해당 사항이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1]에서 명시한 연구시설장비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td> <td></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물 부담 내역 등록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서 명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② 현물로 연구시설장비를 등록 시, 해당 사항이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1]에서 명시한 연구시설장비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물 부담 내역 등록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서 명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② 현물로 연구시설장비를 등록 시, 해당 사항이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1]에서 명시한 연구시설장비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p> <p>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①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p> <p>나. 연구시설·장비비</p> <p>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p> <p>라. 소프트웨어 활용비</p>									
<p>올바른 예시</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1의1]) <참고 : 연구시설장비 포함대상과 제외대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45%;">포함대상 ②</th> <th style="width: 50%;">제외대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장비운영시설(핵융합장치, 가속기 등) - 연구장비집적시설(나노랩센터,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 과학시료관리시설(생물사용시설, 화합물은행 등) -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 빅데이터센터 등) - 관측/측정시설(기상관측시설, 천문측정센터 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시설 -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교수실,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행정동, 강당, 기숙사, 식당) 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장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등) -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향온, 향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조성형 장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office, Matlab 등)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td> </tr> </tbody> </table>	구분	포함대상 ②	제외대상	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장비운영시설(핵융합장치, 가속기 등) - 연구장비집적시설(나노랩센터,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 과학시료관리시설(생물사용시설, 화합물은행 등) -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 빅데이터센터 등) - 관측/측정시설(기상관측시설, 천문측정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시설 -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교수실,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행정동, 강당, 기숙사, 식당) 등 	연구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등) -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향온, 향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조성형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office, Matlab 등)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구분	포함대상 ②	제외대상							
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장비운영시설(핵융합장치, 가속기 등) - 연구장비집적시설(나노랩센터,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 과학시료관리시설(생물사용시설, 화합물은행 등) -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 빅데이터센터 등) - 관측/측정시설(기상관측시설, 천문측정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시설 -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교수실,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행정동, 강당, 기숙사, 식당) 등 							
연구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등) -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향온, 향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조성형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office, Matlab 등)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p>집행오류 예시</p> <p>○ 연구장비로 보기 어려운 사무용 기기(문서세단기 등)를 현물 대응 장비로 등록</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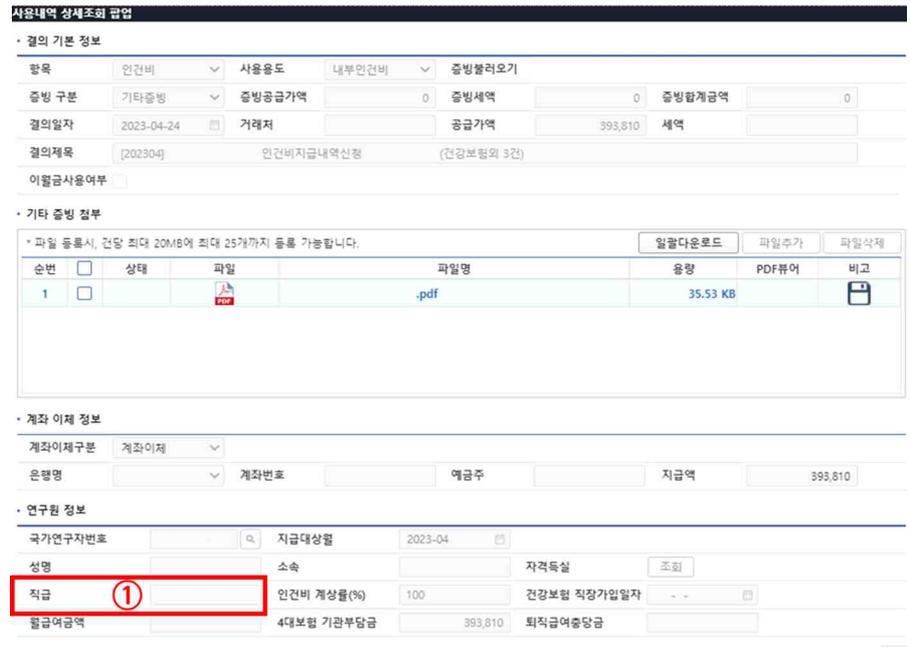
점검분야	점검내용	
기 본	[4] 간접비성 비용 집행	
	<p>항목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등 - (연구지원비) 기관공통비용,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등 -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홍보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p>관련규정</p> <p>「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p>	
	<p>점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사용내역의 결의내역, 세금계산서, 그 외 기타 증명자료 확인 	
	<p>확인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집행 목적이 간접비성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간접비성 비용인 경우, 집행 취소 후 간접비로 집행 	
<p>올바른 예시</p> <p>①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에 명시된 간접비 사용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p> <p>② 연구실 안전(교육/안전용품 등)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서 명시된 간접비 사용용도임을 숙지</p>		
<p>올바른 예시</p> <p><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p> <p>2. 간접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항목 사용용도</p> <p>나. 연구지원비</p> <p>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 통 경비 (중략)</p> <p>①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략)</p> <p>다. 성과활용 지원비</p> <p>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 동 비용 (중략)</p> <p>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 로그램 (중략)</p> <p>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 용 (중략)</p>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중략)</p> <p>②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중증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장기, 신규재용, 연구내용 변경시) 다.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중략)</p> <p>⑤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형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중증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 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입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p> </td> </tr> </table>	<p>항목 사용용도</p> <p>나. 연구지원비</p> <p>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 통 경비 (중략)</p> <p>①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략)</p> <p>다. 성과활용 지원비</p> <p>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 동 비용 (중략)</p> <p>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 로그램 (중략)</p> <p>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 용 (중략)</p>	<p>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중략)</p> <p>②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중증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장기, 신규재용, 연구내용 변경시) 다.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중략)</p> <p>⑤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형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중증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 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입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p>
<p>항목 사용용도</p> <p>나. 연구지원비</p> <p>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 통 경비 (중략)</p> <p>①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략)</p> <p>다. 성과활용 지원비</p> <p>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 동 비용 (중략)</p> <p>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 로그램 (중략)</p> <p>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 용 (중략)</p>	<p>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중략)</p> <p>②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중증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장기, 신규재용, 연구내용 변경시) 다.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중략)</p> <p>⑤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형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중증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 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입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p>	
<p>집행오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자 법정 의무교육과 같은 기관 공통비용 직접비에서 집행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용 직접비에서 집행 ○ 홍보성 비용 직접비에서 집행(학회 홍보부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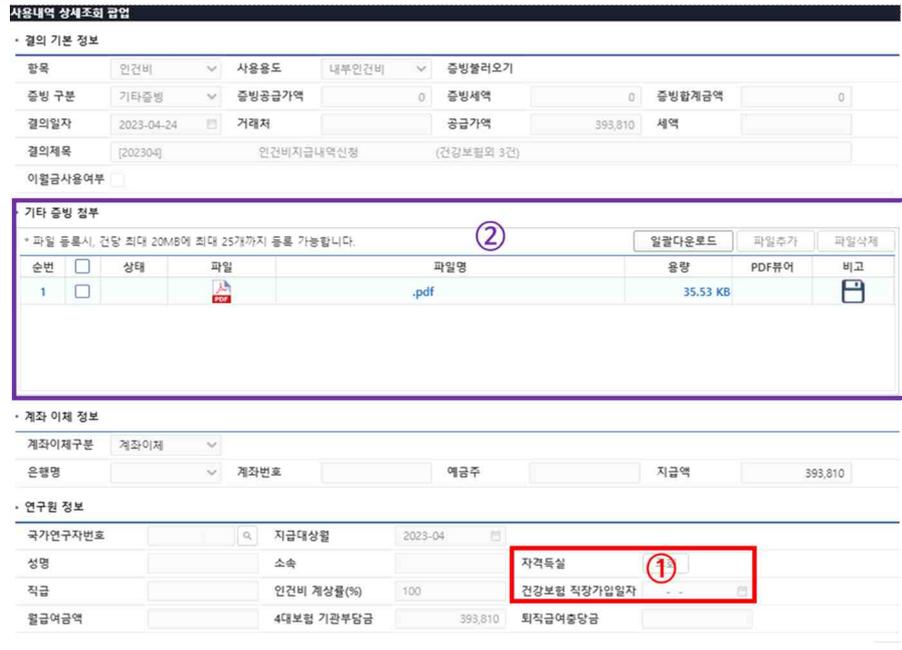
점검분야	점검내용
아 래 예 시	[5]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불가
	<p>항목설명 ○ 직접비 집행 시,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만 집행 가능</p>
	<p>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3항 제1호</p>
	<p>점검방법 ○ 등록된 사용내역의 결의내역, 세금계산서, 그 외 기타 증명자료 확인</p>
	<p>확인 요청사항 ○ 해당 집행내역이 과제의 목표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집행 취소</p>
<p>① 사용내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한 직접비의 사용용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② 과제와의 관련성이 있으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의제목에 집행 목적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업로드</p>	
<p>올바른 예시</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국가연구개발혁신법〉</p> <p>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중략)</p> <p>①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p>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p> </div> <p>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p> </div> <p>〈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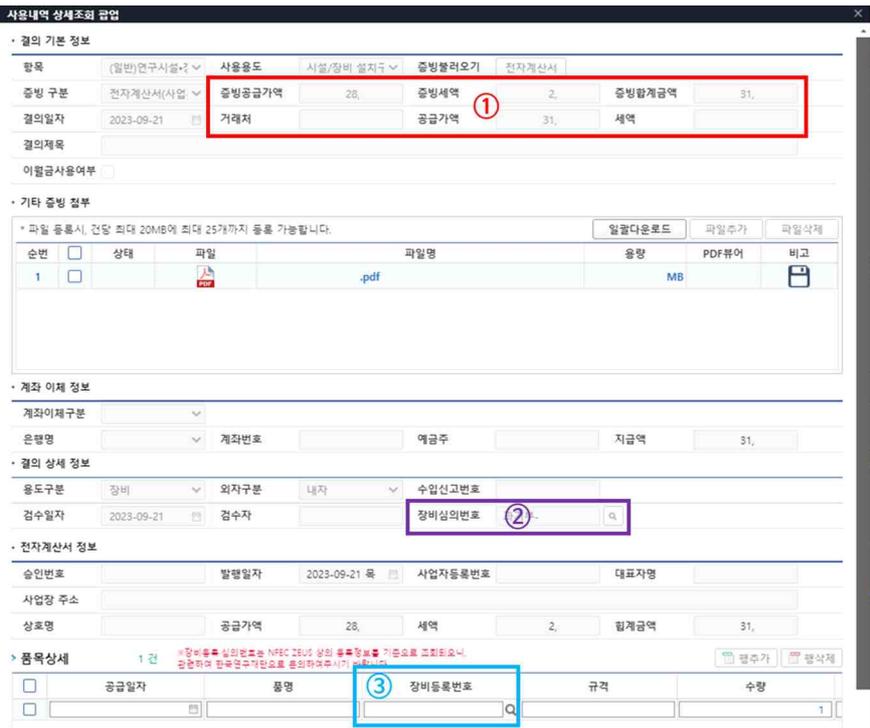
점검분야	점검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기 내</p>	<p>[6] 단계 시작 이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록</p> <p>항목설명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 시작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인정 * 품의/견적 ~ 지출/검수/사용/결과서 등 모든 행위가 연구개발과제 단계 시작일 이후인 경우를 지칭</p> <p>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p> <p>점검방법 ○ 등록된 사용내역의 결의내역, 세금계산서, 그 외 기타 증명자료 확인</p> <p>확인 요청사항 ○ 해당 집행내역의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이 연구개발과제 단계 시작일 이전인지 여부 확인 ⇒ 연구개발과제 단계 시작 전 구매행위가 발생한 결제내역의 경우 집행 취소</p> <p>① 연계 증빙을 비롯한 데이터 값에서 확인되는 날짜가 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이후인지 확인 ② 그 외 기타 증명자료에서 물품구매와 관련된 행위가 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이후인지 확인</p> <p>올바른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연구비카드 매출전표〉</p>  <p>① 거래 일자 2023-08-08</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물품구매계약서〉</p>  <p>② 계약 기간 2023.11.28(목) ~ 2023.12.22(금) 2023년 11월 28일</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전자세금계산서〉</p>  <p>① 작성일자 2023-01-07</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거래명세표〉</p>  <p>② 2023년 12월 7일</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견적서〉</p>  <p>② 견적일자 2023.06.19</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해당 증명자료들은 예시입니다.</p>
	<p>집행오류 예시</p> <p>○ 과제 시작 전 지출된 금액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등록 ○ 과제 시작 전 날짜가 확인되는 견적서/의뢰서 등을 포함한 거래내역을 연구개발비에서 사용</p>

점검분야	점검내용																																																																																																																								
기 능	[7] 연구개발비 항목/사용용도 오류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항목설명</td> <td>○ 연구개발비 집행 시, 각각의 집행내역은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성격에 부합하여야 함</td> </tr> <tr> <td>관련규정</td> <td>「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td> </tr> <tr> <td>점검방법</td> <td>○ 등록된 사용내역의 결의내역, 세금계산서, 그 외 기타 증명자료 확인</td> </tr> </table>	항목설명	○ 연구개발비 집행 시, 각각의 집행내역은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성격에 부합하여야 함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점검방법	○ 등록된 사용내역의 결의내역, 세금계산서, 그 외 기타 증명자료 확인																																																																																																																		
	항목설명	○ 연구개발비 집행 시, 각각의 집행내역은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성격에 부합하여야 함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점검방법	○ 등록된 사용내역의 결의내역, 세금계산서, 그 외 기타 증명자료 확인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확인 요청사항</td> <td> ○ 해당 비용이 각각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부합하는지 확인 ※ 다음과 같은 비용은 불인정 대상에 해당 ▶ 출장, 장비 운송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렌터카 비용 ▶ 회의/야근 및 특근 등과 관계 없는 식비(다과비) ◆ 해당 사항 통합Ezbaro 업데이트 불필요(정산 중 필요시, 개별 요청 예정) </td> </tr> </table>	확인 요청사항	○ 해당 비용이 각각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부합하는지 확인 ※ 다음과 같은 비용은 불인정 대상에 해당 ▶ 출장, 장비 운송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렌터카 비용 ▶ 회의/야근 및 특근 등과 관계 없는 식비(다과비) ◆ 해당 사항 통합Ezbaro 업데이트 불필요(정산 중 필요시, 개별 요청 예정)																																																																																																																							
확인 요청사항	○ 해당 비용이 각각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부합하는지 확인 ※ 다음과 같은 비용은 불인정 대상에 해당 ▶ 출장, 장비 운송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렌터카 비용 ▶ 회의/야근 및 특근 등과 관계 없는 식비(다과비) ◆ 해당 사항 통합Ezbaro 업데이트 불필요(정산 중 필요시, 개별 요청 예정)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올바른 예시</td> <td>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록 시, 혁신법에서 명시한 연구개발비 항목/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에 등록 ○ 또한, 각각의 집행내역 등록 시 연구개발비 항목/사용용도별로 요구되는 정보값이 모두 입력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에서 관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전문가 활용비 사용내역 화면 일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4">· 결의 상세 정보</td></tr> <tr><td>소속</td><td>전문가명</td><td>국가연구자번호</td><td></td></tr> <tr><td>지급금액</td><td>300000</td><td>기타소득세</td><td>0</td></tr> <tr><td colspan="4">▶ 전문가 목록 1 건</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전문가활용방법</td><td>전문가활용시작일시</td><td>전문가활용종료일시</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비대면</td><td>2022-03-31 11:00</td><td>2022-03-31 12:00</td></tr> <tr><td></td><td></td><td></td><td>활용장소</td></tr> <tr><td></td><td></td><td></td><td>비대면</td></tr> </tabl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출장비 사용내역 화면 일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4">· 결의 상세 정보</td></tr> <tr><td>용도구분</td><td>국내출장</td><td>학술행사여부</td><td><input type="checkbox"/></td></tr> <tr><td>국가연구자번호</td><td></td><td>출장자명</td><td></td></tr> <tr><td>출장목적</td><td colspan="3"></td></tr> <tr><td>출장 시작일시</td><td></td><td>출장 종료일시</td><td></td></tr> <tr><td>출발지</td><td>경유지</td><td>도착지</td><td></td></tr> <tr><td>학술행사명</td><td>학술행사</td><td>주안단체명</td><td></td></tr> <tr><td>학술행사 시작일</td><td>--</td><td>학술행사 종료일</td><td>--</td></tr> <tr><td>개최국</td><td></td><td>개최도시</td><td></td></tr> <tr><td>논문명</td><td colspan="3"></td></tr> <tr><td>발표주제</td><td colspan="3"></td></tr> </tabl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회의비 사용내역 화면 일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4">· 결의 상세 정보</td></tr> <tr><td>회의시작일시</td><td>2022-10-07 15:00</td><td>회의종료일시</td><td>2022-10-07 17:00</td></tr> <tr><td colspan="4">회의장소</td></tr> <tr><td colspan="4">▶ 참석자 목록 5 건</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순번</td><td>참석자 내외구분</td><td>참석자 소속</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1</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2</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3</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4</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5</td><td>외부</td><td></td></tr> </table> </div> </td> </tr> <tr> <td data-bbox="287 1836 1444 2033">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집행오류 예시</td> <td> ○ (오류) 출장 시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오류) 회의 등에서 발생하는 식비(다과비)를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불인정) 근무지 출퇴근 목적으로 렌터카 대여 ○ (불인정) 회의 목적이 아닌, 업무추진비 용도로 식비 등 집행 </td> </tr> </table> </td> </tr> </table>	올바른 예시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록 시, 혁신법에서 명시한 연구개발비 항목/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에 등록 ○ 또한, 각각의 집행내역 등록 시 연구개발비 항목/사용용도별로 요구되는 정보값이 모두 입력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에서 관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전문가 활용비 사용내역 화면 일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4">· 결의 상세 정보</td></tr> <tr><td>소속</td><td>전문가명</td><td>국가연구자번호</td><td></td></tr> <tr><td>지급금액</td><td>300000</td><td>기타소득세</td><td>0</td></tr> <tr><td colspan="4">▶ 전문가 목록 1 건</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전문가활용방법</td><td>전문가활용시작일시</td><td>전문가활용종료일시</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비대면</td><td>2022-03-31 11:00</td><td>2022-03-31 12:00</td></tr> <tr><td></td><td></td><td></td><td>활용장소</td></tr> <tr><td></td><td></td><td></td><td>비대면</td></tr> </tabl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출장비 사용내역 화면 일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4">· 결의 상세 정보</td></tr> <tr><td>용도구분</td><td>국내출장</td><td>학술행사여부</td><td><input type="checkbox"/></td></tr> <tr><td>국가연구자번호</td><td></td><td>출장자명</td><td></td></tr> <tr><td>출장목적</td><td colspan="3"></td></tr> <tr><td>출장 시작일시</td><td></td><td>출장 종료일시</td><td></td></tr> <tr><td>출발지</td><td>경유지</td><td>도착지</td><td></td></tr> <tr><td>학술행사명</td><td>학술행사</td><td>주안단체명</td><td></td></tr> <tr><td>학술행사 시작일</td><td>--</td><td>학술행사 종료일</td><td>--</td></tr> <tr><td>개최국</td><td></td><td>개최도시</td><td></td></tr> <tr><td>논문명</td><td colspan="3"></td></tr> <tr><td>발표주제</td><td colspan="3"></td></tr> </tabl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회의비 사용내역 화면 일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4">· 결의 상세 정보</td></tr> <tr><td>회의시작일시</td><td>2022-10-07 15:00</td><td>회의종료일시</td><td>2022-10-07 17:00</td></tr> <tr><td colspan="4">회의장소</td></tr> <tr><td colspan="4">▶ 참석자 목록 5 건</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순번</td><td>참석자 내외구분</td><td>참석자 소속</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1</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2</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3</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4</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5</td><td>외부</td><td></td></tr> </table> </div>	· 결의 상세 정보				소속	전문가명	국가연구자번호		지급금액	300000	기타소득세	0	▶ 전문가 목록 1 건				<input type="checkbox"/>	전문가활용방법	전문가활용시작일시	전문가활용종료일시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2022-03-31 11:00	2022-03-31 12:00				활용장소				비대면	· 결의 상세 정보				용도구분	국내출장	학술행사여부	<input type="checkbox"/>	국가연구자번호		출장자명		출장목적				출장 시작일시		출장 종료일시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학술행사명	학술행사	주안단체명		학술행사 시작일	--	학술행사 종료일	--	개최국		개최도시		논문명				발표주제				· 결의 상세 정보				회의시작일시	2022-10-07 15:00	회의종료일시	2022-10-07 17:00	회의장소				▶ 참석자 목록 5 건				<input type="checkbox"/>	순번	참석자 내외구분	참석자 소속	<input type="checkbox"/>	1	내부		<input type="checkbox"/>	2	내부		<input type="checkbox"/>	3	내부		<input type="checkbox"/>	4	내부		<input type="checkbox"/>	5	외부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집행오류 예시</td> <td> ○ (오류) 출장 시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오류) 회의 등에서 발생하는 식비(다과비)를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불인정) 근무지 출퇴근 목적으로 렌터카 대여 ○ (불인정) 회의 목적이 아닌, 업무추진비 용도로 식비 등 집행 </td> </tr> </table>	집행오류 예시	○ (오류) 출장 시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오류) 회의 등에서 발생하는 식비(다과비)를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불인정) 근무지 출퇴근 목적으로 렌터카 대여 ○ (불인정) 회의 목적이 아닌, 업무추진비 용도로 식비 등 집행
올바른 예시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록 시, 혁신법에서 명시한 연구개발비 항목/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에 등록 ○ 또한, 각각의 집행내역 등록 시 연구개발비 항목/사용용도별로 요구되는 정보값이 모두 입력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에서 관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전문가 활용비 사용내역 화면 일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4">· 결의 상세 정보</td></tr> <tr><td>소속</td><td>전문가명</td><td>국가연구자번호</td><td></td></tr> <tr><td>지급금액</td><td>300000</td><td>기타소득세</td><td>0</td></tr> <tr><td colspan="4">▶ 전문가 목록 1 건</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전문가활용방법</td><td>전문가활용시작일시</td><td>전문가활용종료일시</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비대면</td><td>2022-03-31 11:00</td><td>2022-03-31 12:00</td></tr> <tr><td></td><td></td><td></td><td>활용장소</td></tr> <tr><td></td><td></td><td></td><td>비대면</td></tr> </tabl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출장비 사용내역 화면 일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4">· 결의 상세 정보</td></tr> <tr><td>용도구분</td><td>국내출장</td><td>학술행사여부</td><td><input type="checkbox"/></td></tr> <tr><td>국가연구자번호</td><td></td><td>출장자명</td><td></td></tr> <tr><td>출장목적</td><td colspan="3"></td></tr> <tr><td>출장 시작일시</td><td></td><td>출장 종료일시</td><td></td></tr> <tr><td>출발지</td><td>경유지</td><td>도착지</td><td></td></tr> <tr><td>학술행사명</td><td>학술행사</td><td>주안단체명</td><td></td></tr> <tr><td>학술행사 시작일</td><td>--</td><td>학술행사 종료일</td><td>--</td></tr> <tr><td>개최국</td><td></td><td>개최도시</td><td></td></tr> <tr><td>논문명</td><td colspan="3"></td></tr> <tr><td>발표주제</td><td colspan="3"></td></tr> </tabl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회의비 사용내역 화면 일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4">· 결의 상세 정보</td></tr> <tr><td>회의시작일시</td><td>2022-10-07 15:00</td><td>회의종료일시</td><td>2022-10-07 17:00</td></tr> <tr><td colspan="4">회의장소</td></tr> <tr><td colspan="4">▶ 참석자 목록 5 건</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순번</td><td>참석자 내외구분</td><td>참석자 소속</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1</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2</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3</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4</td><td>내부</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td><td>5</td><td>외부</td><td></td></tr> </table> </div>	· 결의 상세 정보				소속	전문가명	국가연구자번호		지급금액	300000	기타소득세	0	▶ 전문가 목록 1 건				<input type="checkbox"/>	전문가활용방법	전문가활용시작일시	전문가활용종료일시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2022-03-31 11:00	2022-03-31 12:00				활용장소				비대면	· 결의 상세 정보				용도구분	국내출장	학술행사여부	<input type="checkbox"/>	국가연구자번호		출장자명		출장목적				출장 시작일시		출장 종료일시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학술행사명	학술행사	주안단체명		학술행사 시작일	--	학술행사 종료일	--	개최국		개최도시		논문명				발표주제				· 결의 상세 정보				회의시작일시	2022-10-07 15:00	회의종료일시	2022-10-07 17:00	회의장소				▶ 참석자 목록 5 건				<input type="checkbox"/>	순번	참석자 내외구분	참석자 소속	<input type="checkbox"/>	1	내부		<input type="checkbox"/>	2	내부		<input type="checkbox"/>	3	내부		<input type="checkbox"/>	4	내부		<input type="checkbox"/>	5	외부					
· 결의 상세 정보																																																																																																																									
소속	전문가명	국가연구자번호																																																																																																																							
지급금액	300000	기타소득세	0																																																																																																																						
▶ 전문가 목록 1 건																																																																																																																									
<input type="checkbox"/>	전문가활용방법	전문가활용시작일시	전문가활용종료일시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2022-03-31 11:00	2022-03-31 12:00																																																																																																																						
			활용장소																																																																																																																						
			비대면																																																																																																																						
· 결의 상세 정보																																																																																																																									
용도구분	국내출장	학술행사여부	<input type="checkbox"/>																																																																																																																						
국가연구자번호		출장자명																																																																																																																							
출장목적																																																																																																																									
출장 시작일시		출장 종료일시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학술행사명	학술행사	주안단체명																																																																																																																							
학술행사 시작일	--	학술행사 종료일	--																																																																																																																						
개최국		개최도시																																																																																																																							
논문명																																																																																																																									
발표주제																																																																																																																									
· 결의 상세 정보																																																																																																																									
회의시작일시	2022-10-07 15:00	회의종료일시	2022-10-07 17:00																																																																																																																						
회의장소																																																																																																																									
▶ 참석자 목록 5 건																																																																																																																									
<input type="checkbox"/>	순번	참석자 내외구분	참석자 소속																																																																																																																						
<input type="checkbox"/>	1	내부																																																																																																																							
<input type="checkbox"/>	2	내부																																																																																																																							
<input type="checkbox"/>	3	내부																																																																																																																							
<input type="checkbox"/>	4	내부																																																																																																																							
<input type="checkbox"/>	5	외부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20%;">집행오류 예시</td> <td> ○ (오류) 출장 시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오류) 회의 등에서 발생하는 식비(다과비)를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불인정) 근무지 출퇴근 목적으로 렌터카 대여 ○ (불인정) 회의 목적이 아닌, 업무추진비 용도로 식비 등 집행 </td> </tr> </table>	집행오류 예시	○ (오류) 출장 시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오류) 회의 등에서 발생하는 식비(다과비)를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불인정) 근무지 출퇴근 목적으로 렌터카 대여 ○ (불인정) 회의 목적이 아닌, 업무추진비 용도로 식비 등 집행																																																																																																																							
집행오류 예시	○ (오류) 출장 시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오류) 회의 등에서 발생하는 식비(다과비)를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 ○ (불인정) 근무지 출퇴근 목적으로 렌터카 대여 ○ (불인정) 회의 목적이 아닌, 업무추진비 용도로 식비 등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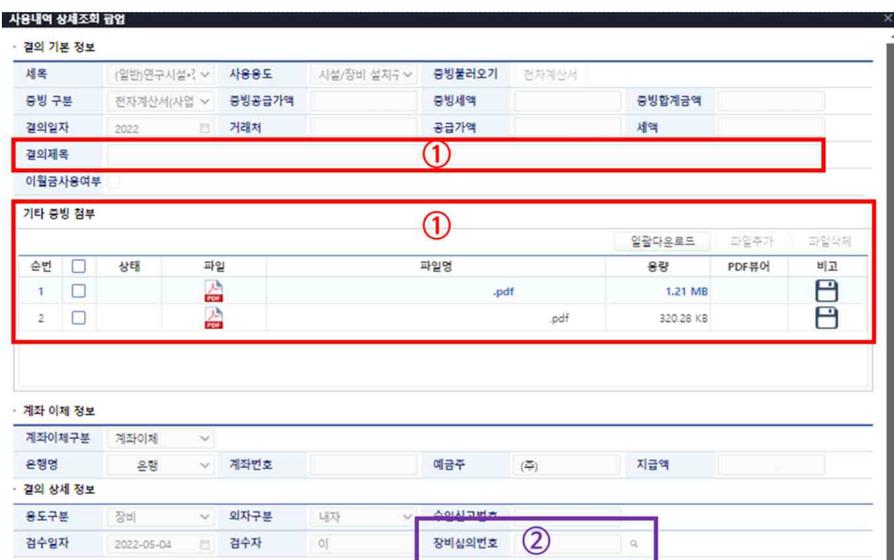
점검분야	점검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기 예</p>	<p>[8] 결의내역 식별 불가</p>
	<p>항목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등록 시에는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내역 등록 시, 요구되는 정보(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구매) 구매한 물품에 대한 품목 정보 ▶ (소프트웨어 구매/구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계약 기간 등 ▶ (일용직활용비) 지출 목적 등
	<p>관련규정</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81조(연구개발비 정산 방법)</p>
	<p>점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사용내역의 결의내역, 세금계산서, 그 외 기타 증명자료 확인 <p>확인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Ezbaro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서 지출 목적을 포함한 정산에 필요한 정보 및 증명자료가 누락되었는지 확인 ⇒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결의내역에 추가 증명자료를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개발비 사용목적/구매한 물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의제목에 명시 ②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자료 업로드 ③ 전자세금계산서가 연계 증빙으로 있는 경우 구매한 물품에 대한 품목정보가 확인 가능하므로 일부 필수 요구사항 대체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p style="text-align: center;">올바른 예시</p>	
<p>집행오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결의제목에서 연구개발비 사용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명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구매 품목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점검분야	점검내용
인 건 비	<p>[9] 전임교원 신분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p>
	<p>항목설명</p> <p>○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등과 같은 전임교원은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p>
	<p>관련규정</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 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p>
	<p>점검방법</p> <p>○ 과제별 참여연구원 신분이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등)으로 설정된 인물을 대상으로 인건비 현금 집행내역 조회</p>
	<p>확인 요청사항</p> <p>○ 해당 연구자의 현재 신분이 전임교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만약 신분 변동 등으로 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해진 경우,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업데이트 필요(◆ 차년도 과제부터 입력) ⇒ 현금 지급 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집행 취소</p>
<p>① 통합 Ezbaro에 등록된 연구자 신분 확인 후 인건비 집행</p>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p>올바른 예시</p>	
<p>집행오류 예시</p> <p>○ 통합Ezbaro에 등록된 참여연구자의 신분이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집행</p>	

점검분야	점검내용
인 건 비	<p>[10]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주관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p>
	<p>항목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는 신규 채용 인력* 외에는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 ※ 그 외 연구개발기관이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경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금 계상 가능
	<p>관련규정</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p>
	<p>점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참여연구원 소속이 영리기관으로 설정된 인물을 대상으로 인건비 현금 집행내역 추출 ○ 추출된 집행내역 대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임용날짜 확인
	<p>확인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자의 소속 및 임용날짜 확인 ⇒ 영리기관 소속이 아니거나 신규 채용 인력에 해당 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업로드 ⇒ 현금 지급 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집행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참여연구자의 직장가입일자를 확인 후 인건비 집행 ② 또한, 참여연구자가 실제로 신규채용인력인지 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업로드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p>올바른 예시</p>	
<p>집행오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인건비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관련 증명자료가 없어 임용날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인건비를 현금 지급하였고, 증명자료에 기재된 임용날짜가 연구개발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닌 경우 	

점검분야	점검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 시설 장비비 및 연구 재료비</p>	<p>[11]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심의번호 누락</p> <p>항목설명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대상 ○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p> <p>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제4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제1항/ 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제1항 - 제9조(심의대상)</p> <p>점검방법 ○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매내역 중 심의번호가 없는 값 추출 ○ 추출된 값 중에서 별도로 Ez-Check 검증제외를 받은 내역 제외</p> <p>확인 요청사항 ○ 연구시설·장비의 총 구축단가가 3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심의번호 발급 여부 확인 ⇒ 심의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결의내역에 등록/수정 ⇒ 심의번호가 없는 경우, 재단 내 사업부서 보고/후속 절차 진행 ○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재단 내 사업부서 보고/후속 절차 진행(Ez-Check 검증제외 등) * 보안과제 또는 각각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장비를 다수 구매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등</p> <p>① 연구시설·장비의 단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후 집행내역 등록 ② 3천만 원 초과 시 장비심의번호를 기재 ③ 장비 심의 후, 구축까지 완료되었을 때 ZEUS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여 장비 등록번호 발급</p>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p style="text-align: center;">올바른 예시</p>
	<p>집행오류 예시</p> <p>○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기 앞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음 ○ 심의 자체는 받았으나, 해당 정보를 통합Ezbaro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심의번호까지는 입력하였으나, 구축 완료 후 ZEUS 등록번호 미기입</p>

점검분야	점검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 시설 장비비 및 연구 재료비</p>	<p>[12] 검수 여부 확인 불가</p>
	<p>항목설명 ○ 연구시설·장비 등 구매 시, 자체 규정에 따른 검수 절차 필수</p> <p>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제3항</p> <p>점검방법 ○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검수자 정보 및 증명자료 확인</p> <p>확인 요청사항 ○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검수 여부 확인 ⇒ 검수가 되지 않은 경우, 검수 완료 후 연구개발기관 자산 등록 및 관리 ◆ 해당 사항 통합Ezbaro 업데이트 불필요(정산 중 필요시, 개별 요청 예정)</p>
	<p>① 연구개발비 사용 시, 자체 규정에 따른 검수절차를 거치고 검수일자/검수자 정보를 등록</p> <p>②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업로드</p> <p>※ 물품 검수는 연구시설·장비 외에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에서 구매한 내역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p> <p style="text-align: center;">올바른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02 1198 1093 1825">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div> <div data-bbox="1093 1265 1404 1758"> <p style="text-align: center;">(검수 확인서)</p> </div> </div> <p style="text-align: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해당 증명자료는 예시입니다.</p>
<p>집행오류 예시 ○ 자체 규정에 따른 검수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관련 정보 및 증명자료 확인 불가)</p>	

점검분야	점검내용
연구 시설 장비비 및 연구 재료비	[13] 고가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 등 분할 결제
	<p>항목설명</p> <p>○ 고가의 시설·장비 및 재료 등 구매 시, 예산 등 사유로 분할하여 결제하였더라도, 총 결제 단가에 맞는 구매 절차를 통하여 구매하여야 함 * 장비 심의, 중앙 구매 등 포함</p>
	<p>관련규정</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p>
	<p>점검방법</p> <p>○ 동일한 연구책임자·거래처·유사 품목 거래내역 중심 증명자료 및 관련 입력 정보 확인</p>
<p>확인 요청사항</p> <p>○ 함께 조회되는 거래내역들이 동일한 물품을 분할하여 구매한 것이 맞는지 확인 ○ 분할결제 해당 시, 해당 내역들이 총 결제 단가에 맞는 구매 절차를 거쳐 구입 완료되었는지 확인 ⇒ 분할 결제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 단가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연구 시설·장비 심의 및 관련 증명자료(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업로드 ⇒ 만약 특정 사유에 따라 선금/중도금/잔금 형태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통합Ezbaro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결의제목 및 증명자료에 반영(◆ 차년도 과제부터 입력) ◆ 그 외 행정사항 통합Ezbaro 업데이트 불필요(정산 중 필요시, 개별 요청 예정)</p>	
<p>올바른 예시</p> <p>① 연구물품 구매내역을 분할하여 통합Ezbaro에 업로드 시, 구체적인 사유/구매 절차 등을 결의제목 및 관련 증명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내역 등록 ② 분할하여 구매한 연구시설장비의 단가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비 심의번호를 입력</p>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p>The screenshot shows the '사용내역 상세조회 화면' (Usage Record Detailed Search Screen) in Ezbaro. It displays a table of purchase records. The '결의제목' (Decision Title) field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labeled '1'. Below it, the '기타 증명 첨부' (Other Proof Attachment) section shows two PDF files. The '장비심의번호' (Equipment Review Number) field is highlighted with a purple box and labeled '2'.</p>	
<p>집행오류 예시</p> <p>○ 서버 구축 목적으로 개별 구매한 컴퓨터 관련 장비들의 단가가 3천만 원 이상이지만, 연구시설·장비 심의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장비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 수행 시 개별 장비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부품으로 간주하며, 총 구축단가에 개별 장비의 가격이 포함됨</p>	

점검분야

점검내용

(14)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에게 자문료 등 지급

항목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 ○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간 자문료 지급은 제한됨
관련규정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p> <p>- 제41조, 제50조, 제58조(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p> <p>「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 p.204, 205 ※ 2025년도 발간, p.220, 221</p>
점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대상 전문가활용비 지급 여부 확인
확인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활용비 지급 대상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해당 시, 과제 참여기간과 전문가 활용날짜가 중복되는지 여부 확인 ※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과 전문가 활용 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서 집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지양하는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료 지급 대상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이고 기간까지 중복 시,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록 취소 ⇒ 자문료 지급 대상의 과제 참여 기간과 전문가 활용 기간이 상이한 경우, 전문가 활용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업로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해당 연구자가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연구원 정보에 포함되는지 확인 ② 불가피하게 참여연구원 정보에 포함된 인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 전문가 활용 기간과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이 겹치는지 확인 ③ 또한, 구체적인 전문가 활용목적과 그 외 요구되는 기타 증명자료를 통합 Ezbaro에 업로드

연구개발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올바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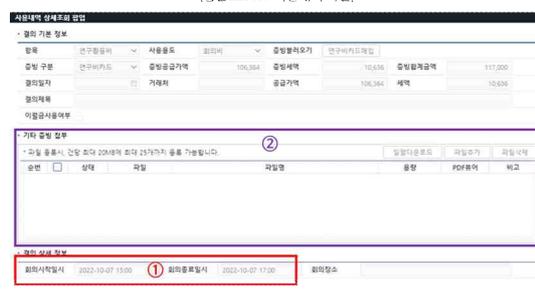
(통합Ezbaro 참여연구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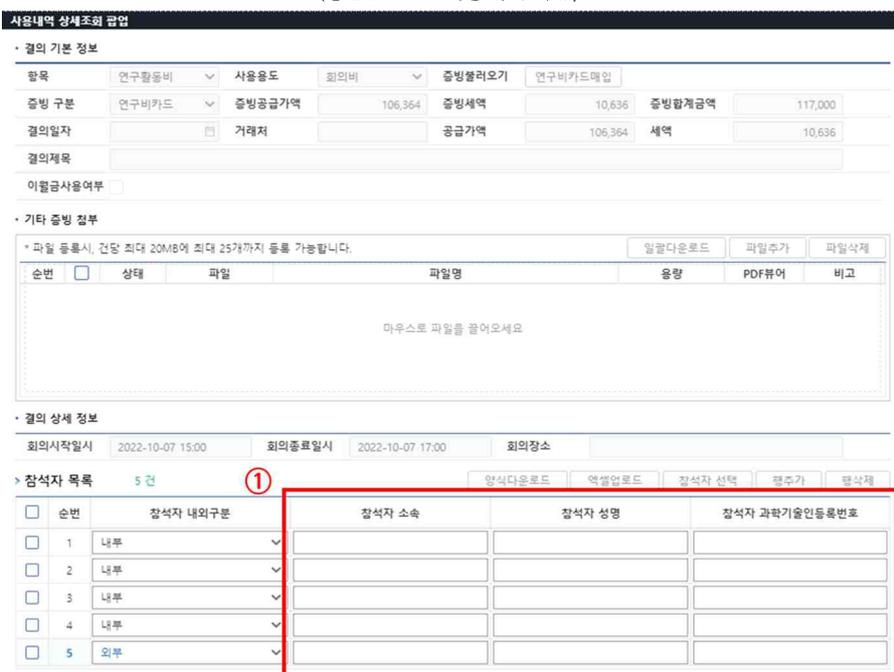


집행오류 예시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 주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점검분야	점검내용																																																																																					
연구회 회의비	<p>[15] 심야 시간 회의비 집행</p>																																																																																					
	<p>항목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는 심야시간 집행을 지양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는 경우 목적,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명자료 필요 ○ 단, 목적 및 사유가 있더라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서 제한하는 경우 불인정 대상에 해당 																																																																																					
	<p>관련규정</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p>점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카드 결제시간이 심야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추출 ○ 심야 집행내역 중 업종명 등이 음식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출 ○ 최종적으로 추출된 집행내역의 증명자료 등 확인 																																																																																					
	<p>확인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회의비 집행내역의 카드 결제 시간 확인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서 심야시간 집행에 대한 인정 여부 확인 ○ 회의목적 및 심야시간 회의비 집행 등에 대한 사유가 확인 가능한지 확인 ◆ 해당 사항 통합Ezbaro 업데이트 불필요(필요시, 개별 요청 예정) <p>① 회의비(식비 및 다과비) 집행 시, 카드 결제시간이 심야시간인지 확인 후 등록</p> <p>② 심야시간에 결제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및 회의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업로드</p>																																																																																					
<p>올바른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02 1489 861 1780"> <p>(연구비카드 매출전표)</p> <table border="1"> <tr><td>카드 번호</td><td></td></tr> <tr><td>거래 일자</td><td>2022-08-09</td></tr> <tr><td>금액</td><td>(금액가액: 부가세: 0)</td></tr> <tr><td>매입 구분</td><td>매입</td></tr> <tr><td>승인 번호</td><td></td></tr> <tr style="border: 2px solid red;"><td>승인 시간</td><td style="text-align: center;">①</td></tr> <tr><td>가맹점명</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가맹점 번호</td><td></td></tr> <tr><td>소재지</td><td></td></tr> </table> </div> <div data-bbox="861 1489 1404 1803"> <p>(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table border="1"> <tr><td colspan="6">비내역 상세조회 범위</td></tr> <tr><td>조회 기본 정보</td><td>항목</td><td>연구용역비</td><td>사용종류</td><td>회의비</td><td>중정통계요기</td></tr> <tr><td>조회 구분</td><td>연구비카드</td><td>당첨통계금액</td><td>106,364</td><td>통합내역</td><td>10,636</td></tr> <tr><td>조회일자</td><td>가액</td><td>당첨통계금액</td><td>106,364</td><td>통합통계금액</td><td>117,000</td></tr> <tr><td>조회내역</td><td>가액</td><td>통계금액</td><td>106,364</td><td>세액</td><td>10,636</td></tr> <tr><td colspan="6">이동금 사용여부</td></tr> <tr><td colspan="6">카카오통계 정보</td></tr> <tr><td>과일 등록시</td><td>인정 최대 200세의 최대 25가지 과일 가능합니다.</td><td>등록일</td><td>과일종류</td><td>과일수익</td><td>과일사액</td></tr> <tr><td>승인</td><td><input type="checkbox"/> 상태</td><td>과일명</td><td>유형</td><td>PDF등록</td><td>비고</td></tr> <tr><td colspan="6">결과 상세 정보</td></tr> <tr><td>회의서적명</td><td>2022-10-07 13:00</td><td>회의종료일시</td><td>2022-10-07 17:00</td><td>회의장소</td><td></td></tr> </table> </div> </div>	카드 번호		거래 일자	2022-08-09	금액	(금액가액: 부가세: 0)	매입 구분	매입	승인 번호		승인 시간	①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소재지		비내역 상세조회 범위						조회 기본 정보	항목	연구용역비	사용종류	회의비	중정통계요기	조회 구분	연구비카드	당첨통계금액	106,364	통합내역	10,636	조회일자	가액	당첨통계금액	106,364	통합통계금액	117,000	조회내역	가액	통계금액	106,364	세액	10,636	이동금 사용여부						카카오통계 정보						과일 등록시	인정 최대 200세의 최대 25가지 과일 가능합니다.	등록일	과일종류	과일수익	과일사액	승인	<input type="checkbox"/> 상태	과일명	유형	PDF등록	비고	결과 상세 정보						회의서적명	2022-10-07 13:00	회의종료일시	2022-10-07 17:00	회의장소	
카드 번호																																																																																						
거래 일자	2022-08-09																																																																																					
금액	(금액가액: 부가세: 0)																																																																																					
매입 구분	매입																																																																																					
승인 번호																																																																																						
승인 시간	①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소재지																																																																																						
비내역 상세조회 범위																																																																																						
조회 기본 정보	항목	연구용역비	사용종류	회의비	중정통계요기																																																																																	
조회 구분	연구비카드	당첨통계금액	106,364	통합내역	10,636																																																																																	
조회일자	가액	당첨통계금액	106,364	통합통계금액	117,000																																																																																	
조회내역	가액	통계금액	106,364	세액	10,636																																																																																	
이동금 사용여부																																																																																						
카카오통계 정보																																																																																						
과일 등록시	인정 최대 200세의 최대 25가지 과일 가능합니다.	등록일	과일종류	과일수익	과일사액																																																																																	
승인	<input type="checkbox"/> 상태	과일명	유형	PDF등록	비고																																																																																	
결과 상세 정보																																																																																						
회의서적명	2022-10-07 13:00	회의종료일시	2022-10-07 17:00	회의장소																																																																																		
<p>집행오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시간에 회의비를 집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증명자료가 누락된 경우 																																																																																						

점검분야	점검내용																			
연구회 회의비	<p>[16] 회의 시간과 카드 결제 시간 불일치</p>																			
	<p>항목설명 ○ 회의 중 포함되는 식사 등에 대해서만 회의비에서 식비(다과비) 집행 가능</p>																			
	<p>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p>																			
	<p>점검방법 ○ 통합Ezbaro에 등록된 회의비 집행내역의 회의 시간과 카드 결제 시간 비교 ○ 시간이 불일치한 내역 중 업종명이 음식점 등에 해당 시 추출</p>																			
	<p>확인 요청사항 ○ 연구비카드 결제내역이 회의 과정 중에 이어진 식비에 해당하는지 확인 ⇒ 회의와 카드 결제와의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시 집행 취소 ◆ 다음의 경우 후속조치 불필요(필요시, 개별 요청 예정) • 도시락 예약 주문 등에 따라 결제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p>																			
	<p>올바른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통합Ezbaro에 등록된 회의시간과 카드 결제시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확인 후 집행내역 등록</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② 두 시간의 간격이 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도시락 주문 내역 등)를 업로드</p> </div> </div>																			
<p>올바른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연구비카드 매출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카드 번호</td><td></td></tr> <tr><td>거래 일자</td><td>2022-08-09</td></tr> <tr><td>금액</td><td>(공급가격: 부가세: 0)</td></tr> <tr><td>매입 구분</td><td>99당</td></tr> <tr><td>승인 번호</td><td></td></tr> <tr><td>승인 시간</td><td style="border: 2px solid red;">①</td></tr> <tr><td>가맹점명</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가맹점 번호</td><td></td></tr> <tr><td>소재지</td><td></td></tr> </table> </div> </div>	카드 번호		거래 일자	2022-08-09	금액	(공급가격: 부가세: 0)	매입 구분	99당	승인 번호		승인 시간	①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소재지	
카드 번호																				
거래 일자	2022-08-09																			
금액	(공급가격: 부가세: 0)																			
매입 구분	99당																			
승인 번호																				
승인 시간	①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소재지																				
<p>집행오류 예시 ○ 회의 종료 시점부터 6시간 이상 지연 후 연구비카드 결제 행위 발생</p>																				

점검분야	점검내용
연구회 회의비	<p>[17] 동일기관 참석자만 존재하는 회의에서 식비(다과비) 집행</p>
	<p>항목설명 ○ 회의 참석 인원이 모두 같은 소속인 경우,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집행 불가</p>
	<p>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4항</p>
	<p>점검방법 ○ 통합Ezbaro에 등록된 회의비 집행내역 중 참여자 목록에 있는 소속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추출</p>
	<p>확인 요청사항 ○ 해당 회의에서 참석자가 모두 같은 기관 소속인지 여부 확인 ⇒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모두 같은 소속인 경우 해당 결의내역 등록 취소 ◆ 그 외의 경우는 통합Ezbaro 업데이트 불필요(필요시, 개별 요청 예정)</p>
<p>① 회의비(식비) 집행 시 각 참여연구자의 소속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p>	
<p>올바른 예시</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div>	
<p>집행오류 예시 ○ 참여연구자는 아니지만, 같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인원들만 참석하는 회의에서 식비 등 결제</p>	

점검분야

점검내용

[18] 회의 장소와 카드 결제 장소 불일치

연구비 회비

항목설명	○ 회의 중 포함되는 식사 등에 대해서만 회의비에서 식비(다과비) 집행 가능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점검방법	○ 통합Ezbaro에 등록된 회의 장소와 카드 결제 장소의 위치 비교 ○ 두 장소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리 있는 경우 추출 ※ 출장지에서의 식사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확인 요청사항	○ 해당 회의비 집행내역의 회의 장소와 연구비카드 결제 장소 확인 ⇒ 출장 등으로 인하여 두 장소 간 거리가 차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하는 증명자료(출장신청서 등)를 통합Ezbaro에 업로드 ⇒ 그 외 회의와 카드 결제 내역이 관련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행 취소 ◆ 다음의 경우 후속조치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등 결제로 본사와 실제 결제 장소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회의 장소 값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올바른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의비 집행내역에서 회의장소가 실제 카드가 결제된 장소와 관련성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후 시스템 등록 ② 만약 두 장소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제 회의장소 인근에서 식사까지 이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록
집행오류 예시	<p>○ 회의 장소는 본교(서울)로 되어있으나, 카드 결제 장소가 제주도인 경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연구비카드 매출전표></p> </div> </div>

점검분야	점검내용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연구 회 비</p>	<p>[19] 동일 인물이 2개 이상 회의에 동시에 참석</p> <p>항목설명 ○ 1명이 동일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2개 이상의 회의에 동시에 참석 불가</p> <p>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제3호</p> <p>점검방법 ○ 회의비 사용내역 중 참석자 정보에 있는 참석자의 국가연구자번호 기준 동일한 시간대에 2건 이상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가 누락된 경우, 성명 등을 기준으로 매칭</p> <p>확인 요청사항 ○ 실제로 해당 인원이 2개 이상 회의에 중복 참석한 것인지 확인 ○ 중복 참석이 맞는 경우, 해당 인원 제외 시 자체 규정 등에서 정하는 식비 단가를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중복 참석 및 단가 초과 여부 확인 시, 초과된 차액분만큼 집행 취소 ◆ 다음의 경우 후속조치 불필요(필요시, 개별 요청 예정) •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여도,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하는 자체규정에 따른 회의비 식비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중복되는 회의내역이 식비(다과비)처럼 인원수가 지출 상한선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 • 중복된 것으로 확인된 각 회의내역의 참여자가 동명이인인 경우</p>																																																																										
	<p>올바른 예시</p> <p>①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중복 집계되지 않도록 회의시간 및 참석자 목록을 확인 후 등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p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2px;">사용내역 상세조회 집행</p> <p>· 결의 기본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항목</td> <td>연구활동비</td> <td>사용용도</td> <td>회의비</td> <td>중빙물리오기</td> <td>연구비카드매입</td> </tr> <tr> <td>중빙 구분</td> <td>연구비카드</td> <td>중빙공급가액</td> <td>106,364</td> <td>중빙세액</td> <td>10,636</td> </tr> <tr> <td>결의일자</td> <td>거래처</td> <td>공급가액</td> <td>106,364</td> <td>세액</td> <td>10,636</td> </tr> <tr> <td>결의제목</td> <td colspan="5"></td> </tr> </table> <p>이월금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p> <p>· 기타 중빙 정보</p> <p>* 파일 등록시, 건당 최대 20MB에 최대 2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순번</th> <th>상태</th> <th>파일</th> <th>파일명</th> <th>용량</th> <th>PDF뷰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마우스로 파일을 불러오세요</td> </tr> </tbody> </table> <p>결의 상세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회의시작일시</td> <td>2022-10-07 15:00</td> <td>회의종료일시</td> <td>2022-10-07 17:00</td> <td>회의장소</td> <td></td> </tr> </table> <p>참석자 목록 5 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순번</th> <th>참석자 내외구분</th> <th>참석자 소속</th> <th>참석자 성명</th> <th>참석자 과학기술인등록번호</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checkbox"/></td> <td>1 내부</td> <td></td> <td></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2 내부</td> <td></td> <td></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3 내부</td> <td></td> <td></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4 내부</td> <td></td> <td></td> <td></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5 외부</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div>	항목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회의비	중빙물리오기	연구비카드매입	중빙 구분	연구비카드	중빙공급가액	106,364	중빙세액	10,636	결의일자	거래처	공급가액	106,364	세액	10,636	결의제목						순번	상태	파일	파일명	용량	PDF뷰어	비고	마우스로 파일을 불러오세요							회의시작일시	2022-10-07 15:00	회의종료일시	2022-10-07 17:00	회의장소		순번	참석자 내외구분	참석자 소속	참석자 성명	참석자 과학기술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1 내부				<input type="checkbox"/>	2 내부				<input type="checkbox"/>	3 내부				<input type="checkbox"/>	4 내부				<input type="checkbox"/>	5 외부			
	항목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회의비	중빙물리오기	연구비카드매입																																																																					
중빙 구분	연구비카드	중빙공급가액	106,364	중빙세액	10,636																																																																						
결의일자	거래처	공급가액	106,364	세액	10,636																																																																						
결의제목																																																																											
순번	상태	파일	파일명	용량	PDF뷰어	비고																																																																					
마우스로 파일을 불러오세요																																																																											
회의시작일시	2022-10-07 15:00	회의종료일시	2022-10-07 17:00	회의장소																																																																							
순번	참석자 내외구분	참석자 소속	참석자 성명	참석자 과학기술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1 내부																																																																										
<input type="checkbox"/>	2 내부																																																																										
<input type="checkbox"/>	3 내부																																																																										
<input type="checkbox"/>	4 내부																																																																										
<input type="checkbox"/>	5 외부																																																																										
<p>집행오류 예시</p> <p>○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시간/장소에 유사한 회의목적으로 카드를 두 번 결제</p> <p>○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된 두 개의 회의에 특정 인원이 중복으로 확인</p>																																																																											

점검분야	점검내용
연구활동비 출장비	[20] 출장비 중복 집행
	<p>항목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기간이 겹치는 출장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중복집행으로 간주 ※ 출장지에서 추가 출장을 가는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나, 그에 따른 증명자료 필요
	<p>관련규정</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제3호
	<p>점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내역 중 출장기간 및 국가연구자번호가 모두 중복되는 경우 추출 ○ 통합Ezbaro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비/식비/교통비 등이 구분가능한 경우는 제외 처리
<p>확인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비가 중복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 출장 경비를 다수 과제에서 분할 처리한 경우, 집행내역별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자료 등을 업로드 ⇒ 출장 복귀 후 당일 출장을 추가로 있는 경우, 출장지에서 추가 출장을 가는 경우 등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출장신청서 등)를 업로드 ⇒ 그 외 출장비 중복지급 확인 시, 1개 집행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중복 집행내역 결의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참여연구자의 출장 기간이 타 출장 내역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 ② 만약 각각의 출장내역별로 항공료/일비/식비 등이 나누어지는 경우, 해당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업로드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p>올바른 예시</p>	
<p>집행오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출장비를 중복하여 청구 	

점검분야

점검내용

[21] (영리기관) 소모성 비용, 사무용 기기/소프트웨어, 환경 유지 비용

항목설명

-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 집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한됨
 - (소모성 비용) 집행 불가
 - (사무용 기기/소프트웨어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 ⇒ 협약 시, 별도로 제출하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제2항

점검방법

-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집행내역 중 집행이 제한되는 내역 추출
- 추출된 내역 중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이 증명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외

확인 요청사항

- 집행내역이 소모성 비용, 사무용 기기/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 소모성 비용에 해당 시, 집행 취소
- ⇒ 사무용 기기/소프트웨어 또는 연구실 환경 유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증명자료로 업로드

- ①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 집행 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증명자료로 업로드
- ② 소모성 경비는 집행이 불가하므로, 사용내역으로 미등록
- ③ 사무용 기기/소프트웨어 및 환경 유지 비용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들만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으로 등록 가능

올바른 예시

(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1.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시·도	영리기관명	소속	성명
영리기관명			
영리기관명			
영리기관명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총액)

구분	단위	수량	단위	단위	합계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	15,272	원	15,272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원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원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	15,272	원	15,272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원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원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총액)

구분	단위	수량	단위	단위	합계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	15,272	원	15,272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원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원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	15,272	원	15,272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원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원		

집행요류 예시

- 영리기관에서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는 경비 집행
 - 정수기 렌탈비 등
- 영리기관에서 사무용 기기/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비용 집행
 - 사무용 컴퓨터, 문서세단기, Office 365 구독 비용 등
- 영리기관에서 연구실 환경 유지 비용 집행
 - 연구와 무관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점검분야

점검내용

[22] 평일 점심 식대 집행

항목설명 ○ 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이 불가함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14항 제6호

점검방법 ○ 야근/특근 식대 비용 중 평일 낮에 결제된 비용 추출
○ 기관 내 식당업체 등에 일괄 결제된 내역, 해당 기관의 창립기념일 등과 같은 휴일이 증명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확인 요청사항 ○ 야근/특근 식대의 결제 요일 및 시간 확인
⇒ 해당 날짜가 기관 고유의 공휴일이거나, 기관 내 급식업체 등에 일괄 결제된 내역인 경우 증명자료 업로드
⇒ 평일 대낮에 결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집행 취소

- ① 야근/특근 식대 사용내역 등록 시, 야근/특근 시간 및 카드 결제 시간 확인 후 등록
- ② 기관 자체 공휴일 등의 사유로 발생한 야근/특근인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자료 업로드

올바른 예시



집행오류 예시 ○ 평일 점심에 결제된 야근/특근 식대

연구활동비
연구인력지원비

점검분야

점검내용

[23] 근무지(연구개발기관)와 카드 결제 장소 불일치

연구인력지원비
연구개발비

<p>항목설명</p>	<p>○ 야근/특근 식비의 경우, 실제로 해당 야근/특근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p>
<p>관련규정</p>	<p>「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p>
<p>점검방법</p>	<p>○ 연구개발기관 주소와 카드가 실사용된 장소 위치 비교 ○ 두 장소의 위치가 지나치게 멀리있는 집행내역 추출</p>
<p>확인 요청사항</p>	<p>○ 해당 야근/특근 내역과 카드 결제 장소 확인 ⇒ 재택근무/출장 등으로 야근/특근 장소가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명자료 및 근무지 외 야근/특근 관련 자체 규정 업로드 ⇒ 특별한 사유 없이 야근/특근에 따른 결제 장소가 근무지와 다른 경우 해당 집행내역 취소 ◆ 다음의 경우 후속조치 불필요 • 프랜차이즈 등 결제로 본사와 실제 결제 장소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근무지가 결과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경우</p>
<p>올바른 예시</p>	<p>① 야근/특근 식대 사용내역 등록 시, 카드 결제 장소가 근무지 부근인지 확인 ② 근무지를 벗어나는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기관 자체규정을 증명자료로 업로드</p>
<p>집행오류 예시</p>	<p>○ 연구개발기관(대전)과 멀리 떨어진 지역(서울)에서 야근/특근 식대 발생</p>



점검분야

점검내용

[24] 참여연구자에게 일용직 활용비 지급

항목설명 ○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연구수당/보안수당 외 별도의 수당 제공 불가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점검방법 ○ 계좌 이체된 내역이 참여연구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추출
○ 추출된 집행내역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제외
- 일용직 활용 기간이 과제 참여기간과 상이
-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카드 결제 후, 결제자에게 계좌이체

확인 요청사항 ○ 일용직활용비 지급 대상이 참여연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참여연구자 해당 시, 과제 참여 기간과 일용직 활용날짜가 중복되는지 확인
※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과 일용직 활용 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서 집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지양하는 것을 권장
⇒ 개인카드 결제 후 결제자에게 계좌이체를 한 집행내역의 경우, 실제 개인카드 사용 증명자료 및 사유서 첨부
⇒ 지급 대상이 참여연구자이고 참여 기간과 일용직 활용 기간 중복 시,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록 취소
⇒ 지급 대상의 과제 참여 기간과 일용직 활용 기간이 상이한 경우, 일용직 활용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업로드

- ① 일용직활용비 지급 시, 지급대상이 참여연구원 정보에 포함되는지 확인
- ② 참여연구원 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과제 참여기간과 일용직 활용 기간이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및 활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에 첨부

올바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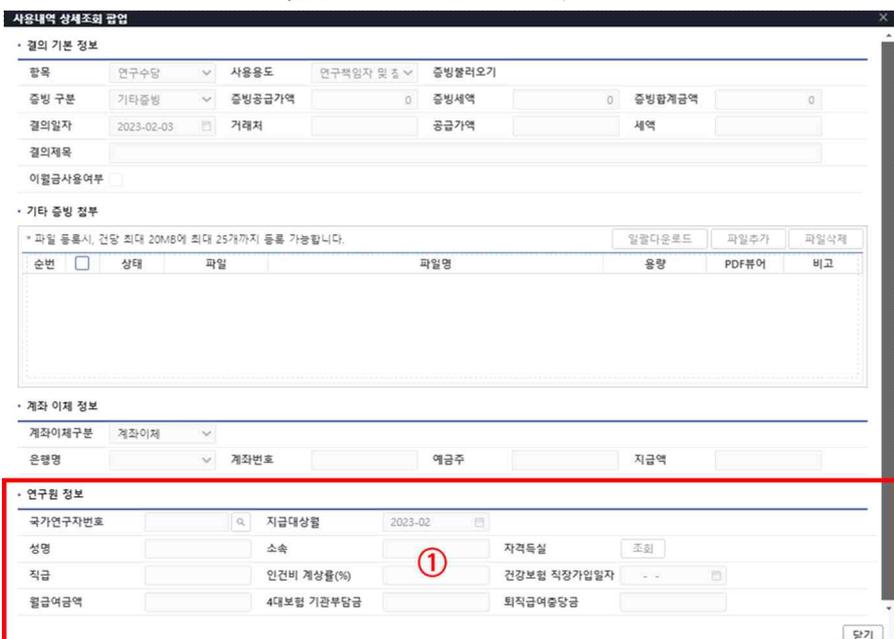
〈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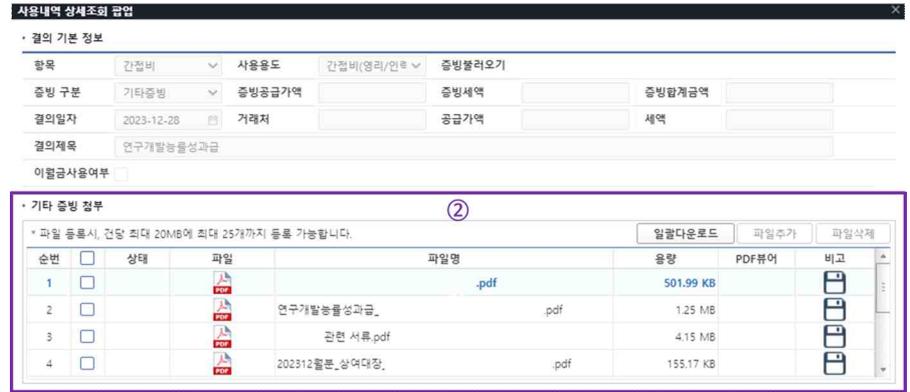
〈통합Ezbaro 참여연구원 정보〉

※ 해당 증명자료는 예시입니다.

집행오류 예시 ○ 인건비/연구수당/보안수당 외 연구개발비에서 계좌이체가 참여연구자에게 이루어졌으나, 해당 집행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에게 실험 참여 수당 지급

연구개발비
그밖의
비용

점검분야	점검내용
연 구 수 당	[25]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
	<p>항목설명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만 수령 가능</p>
	<p>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p>
	<p>점검방법 ○ 연구수당 지급 대상의 역할 구분이 연구근접지원인력인 경우 추출</p>
	<p>확인 요청사항 ○ 연구수당 지급 대상이 해당 과제에서 참여연구자인지 여부 확인 ⇒ 해당 인원이 참여연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업로드 또는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값 업데이트 ⇒ 해당 인원이 연구근접지원인력에 해당 시 집행내역 취소</p>
<p>① 연구수당 집행정보 등록 시, 지급대상의 역할 구분이 "참여연구자"가 맞는지 확인 후 등록</p>	
<p>올바른 예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p>〈통합Ezbaro 참여연구원 정보〉</p>  </div>	
<p>집행오류 예시 ○ 연구행정을 지원하는 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p>	

점검분야	점검내용
<p>간 접 비</p>	<p>[26] (영리기관) 참여연구자에게 간접비에서 인건비 현금 지급</p>
	<p>항목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직접비(인건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 대상인 경우, 직/간접비 모두 현금 집행 불가
	<p>관련규정</p> <p>「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p>
	<p>점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집행내역 중, 참여연구자에게 직접 이체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확인된 내역 중에서 증명자료 등을 통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해당하는지 판단 가능한 경우 제외
	<p>확인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내역이 인건비인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지 확인 ○ 인건비 해당 시, 지급 대상이 참여연구자인지 확인 ⇒ 참여연구자에 해당 시, 집행 내역 취소 및 필요 시 인건비 변경* * 인건비 현금 계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건비 등록 불가
<p>① 간접비에서 인력지원비 지급 시, 지급 대상이 참여연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② 또한, 지급 목적이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인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자료를 업로드</p>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사용내역 화면)</p>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Ezbaro 참여연구원 정보)</p> 	
<p>올바른 예시</p> <p>집행오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에서 참여연구자의 급여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집행 	